

#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

## 1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시행령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,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신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함.

## 2. 대상 펀드

운용사	펀드명	설정일	발생일자	수시공시일자
대신	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 제1호 [주식-재간접형]	2007/08/01	2013/09/25	2013/09/30
슈로더	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A	2009/10/06	2013/09/05	2013/09/06
	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1			
	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2			
	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3			
	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4			
슈로더	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A	2009/10/06	2013/09/28	2013/09/30
	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1			
	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2			
	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3			
	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(주식-재간접형)Class C4			
이스트스프링	이스트스프링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	2007/08/28	2013/09/14	2013/09/16
프랭클린템플턴	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005/12/05	2013/09/27	2013/09/30
JP모간	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ClassA	2010/05/11	2013/09/11	2013/09/11
	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Class C1			
	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Class C2			
	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Class C3			
	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Class C4			

하나UBS	하나UBS 딤섬 증권투자신탁(채권)Class C	2011/12/07	2013/09/11	2013/09/12
하나UBS	하나UBS 슈퍼아시아 증권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Class A	2010/11/01	2013/09/18~29	2013/09/30
	하나UBS 슈퍼아시아 증권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Class C	2010/11/04	2013/09/18~29	2013/09/30
하나UBS	하나UBS120/20증권투자신탁(주식)Class A	2009/09/07	2013/09/05	2013/09/06
	하나UBS120/20증권투자신탁(주식)Class C1			
	하나UBS120/20증권투자신탁(주식)Class C2	2010/09/06	2013/09/05	2013/09/06
	하나UBS120/20증권투자신탁(주식)Class C3			
	하나UBS120/20증권투자신탁(주식)Class C4			

### 3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내용

-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임.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음.
- 처리 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(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)